

## A. 국제협회 등록상표 사용방침

**등록상표에 관한 일반방침.** 국제협회와 그 소속 회원, 클럽 및 지구(단일, 정 및 복합지구로 이하 “지구”라 칭함)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협회의 명칭 및 문장(및 그 변형)은 세계 각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 본 협회의 상표의 침해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법적피해를 사전에 경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 1.

a. **“등록상표”의 정의.** 현존 및 장차 협회의 명칭, 문장, 로고, 씬, 등록상표 및 Lions, Lioness, Leo, Lions Clubs, Lions International 또는 Lions Clubs International 을 포함한 기타 상표에 관련 것을 의미한다.

b. **협회 문장.** 본 협회 및 차타를 받은 각 클럽의 문장은 아래에 제시하는 디자인으로 한다. 각 클럽은 본 협회의 공식문장만 사용하도록 한다.



c. **LEO, LIONESS 혹은 기타 협회공식 프로그램:** 레오클럽, 라이오네스클럽, 공식 경연대회, 청소년캠프 혹은 기타 공식 협회 프로그램의 시행방침에 준하는 조건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클럽판매품 및 클럽용품부나 공식 면허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품목에 사용하지 않는 한 라이온스클럽이나 지구가 자동적으로 협회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d. **방침 적용 및 불법사용 시 보고.** 협회임원 전원, 지명이사, 협회의회장 및 지구부총재는 협회의 등록상표 방침을 준수하며 시행하도록 권장하며 협회 등록상표의 불법적인 사용이 발생할 시 법률부로 보고하도록 하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것을 매년 서면으로 법률부로 제출한다.

e. **전반적인 품질 및 내용에 관한 기준.** 협회의 등록상표 사용에 따른 전반적인 질과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 본 등록상표는 라이온들이 있는 지역사회에 불쾌한 포르노, 나체화, 알코올 및 기타에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국제협회의 운영업무.** 국제협회 및 그 소속 임원, 이사 및 권한을 가진 직원은 국제협회의 목적과 일반적인 운영업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협회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제이사회가 때때로 채택하는 이사회방침에 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반적인 운영 업무란 국제대회, 클럽용품, 라이온지, 사업체 스폰서, 제휴 및 기타 모든 협회의 프로그램 및 출판물을 포함하되 그에 제한하지 않는다.

3. **회원, 클럽 및 지구에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허가.**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 지구는 스폰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 지역사회봉사 및 기타 행사 등 협회의 목적 및 클럽과 지구 운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회의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허가하되 이러한 사용은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이사회방침에 준하도록 하며 해당 상표를 클럽용품부나 공식 면허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품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 a. **유인물.**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 지구가 클럽 및 지구운영에 관련된 유인물(편지지, 명함, 봉투 및 브로셔 등) 에 국제협회의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허가하되 이러한 용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b. **웹 페이지의 사용허가.** 라이온스클럽 및 지구가 해당 웹 페이지에 소속 클럽 및 /혹은 지구명칭과 국제협회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웹 페이지에는 클럽 혹은 지구를 명시하도록 하며 국제협회가 그의 출전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 c. **다운 받은 문장.** 라이온스 회원은 국제협회의 월드 와이드 웹(www) 사이트의 공식 포맷으로부터 국제협회의 문장의 복사를 다운 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월드 와이드 웹 사이트 및 타 인터넷상의 부분을 포함 전자 외 다른 방법으로 국제협회의 등록상표를 복사할 수 없다.

**4.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 지구에 대한 사용허가.** 본 방침에 규정하는 자동적 사용허가 및 면허에 추가로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 지구가 하기의 경우에 국제협회의 등록상표 사용권을 허용한다:

- a. **국제협회의 상표가 표시된 품목 사용.**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 지구는 클럽용품부와 공식 판매계약업자가 제조한 국제협회의 상표가 표시된 품목 사용,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이온스클럽 및 지구가 클럽용품부와 공식 판매계약업자로부터 입수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품목을 사용, 구매, 제조, 공급 혹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1) **의류 (조끼는 제외)에 대한 상표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허용:** 조끼를 제외한 모든 의류품목에 관해서는 라이온스클럽 및 지구가 국제협회의 상표가 표시된 품목을 사용, 구입, 판매, 제조 및 배포하도록 허용하되 1년에 품목별로 30 벌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또한 조끼를 제외한 의류는 클럽은 국제협회의 상표를 표시한 품목의 사용, 매입, 판매, 제조 및 배포에 대한 허가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되 1년에 품목별로 총수가 30 벌 혹은 클럽회원 수 중, 어느 것이든 많은 수를 초과하진 않는 경우에 한한다. 본 장의 목적상 의류는 모자, 셔츠, 넥타이와 같이 신체를 커버, 보호 혹은 장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2) **사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타의 모든 품목:** 모든 조끼, 품목별 총수가 1년에 30 벌을 초과하는 품목 및 본 항에 규정하는 품목 외. 국제협회의 상표를 표시한 품목의 사용, 매입, 판매, 제조 및 배포를 희망하는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 지구는 클럽용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법률부가 사용료 및 (혹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 b. **클럽 혹은 지구가 사업을 스폰서.** 라이온스클럽 및 지구는 클럽 및 혹은 지구사업의 스폰서 명칭 및 혹은 문장에 관련하여 국제협회의 상표를 사용할 때 하기에 따르도록 하며 사용 시에 클럽 및 지구명칭을 명시하며 사용본체가 국제협회의 목적에 상충됨이 없으며 국제협회 혹은 국제재단의 활동, 프로그램 혹은 존재와 경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1) 만약에 사업이 1 개 클럽(들) 및/혹은 지구(단일, 정)사업 일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협회의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해당 클럽 및 혹은 지구에 허용한다.
  - (2) 만약에 사업이 2 개 이상 지구 및/혹은 1 개의 복합지구가 관련된 경우 그 사업을 스폰서 하는 해당 복합지구 총재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3) 만약에 2 개 이상 복합지구에 관련된 경우 그 사업을 스폰서 하는 해당 복합지구와 법률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c. **회비 외 수입 프로그램.** 국제협회가 수시로 특별 회비 외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가능한 한 회원 전원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위해 국제협회 상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로열티 수입은 일반기금으로 누적한다. 라이온스클럽, 지구, 라이온이 스폰서 하는 재단, 혹은 기타 라이온스가 스폰서 하는 기타의 조직(이하 “스폰서”라 칭함)은 아래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비 외 수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이러한 회비 외 수입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는 국제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협회가 스폰서 하는 현존 프로그램과 경쟁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제협회의 상표에 대한 사용허가는 동류의 프로그램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2) 회비 외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의 스폰서는 국제협회의 상표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규정에 해당될 경우 스폰서 하는 지구캐비닛 혹은 적용될 경우 복합지구 총재협회의가 지지하는 결의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협회가 신청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국제협회의 상표사용권을 허가 받으려면 스폰서가 인터넷 웹 사이트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권유자료를 검토하여 이러한 자료가 전반적인 질과 내용에 대한 기준 및 상표에 관해 국제이사회적 적용방침과 일치하는데 확인하는데 동의한다. 권유를 시작하기 전에 웹 사이트 디자인을 비롯한 자료 전부를 법률부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 (4) 스폰서는 크레딧 카드(적용될 경우)를 포함하여 국제협회의 등록상표가 인쇄 혹은 첨부될 권유용 자료 및 기타 자료에 신원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 (5) 스폰서 및 회비 외 수입 프로그램에 관련된 업자는 스폰서가 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총매상 혹은 순수입의 어느 것이든 적은 액수의 10%를 국제협회의 상표사용에 대한 로열티로 지불하도록 동의한다. 재정부는 사용허가를 득한 각 스폰서에 최소한 연 1회 연락을 취하여 국제협회에 대한 로열티 지불액을 결정한다. 각 스폰서는 업자가 보유하는 모든 관련기록 및 서류를 점검하므로 로열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권리를 갖도록 장려한다.
- (6) 국제이사회는 스폰서 및(알게 되는 한) 어느 업자에게도 통지하여 국제협회의 상표사용에 대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이러한 취소에 대해 스폰서 및 업자간의 계약상의 권리를 검토할 기회를 고려한다. 사용권이 취소될 경우 해당 업자는 국제협회의 상표사용을 즉각 중지하도록 한다.
- (7) 스폰서 및 회비 외 수입 프로그램에 관련된 업자는 국제협회가 제공하는 우송용 회원 명부를 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만 사용하도록 하며 이러한 명단을 이외의 목적에 사용 및 배포하는 경우 국제협회는 국제협회의 상표사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위반업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는 즉시 발효한다. 허가 없이 우송용 회원명부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 및 무단 복사하는 스폰서 및/혹은 회비 외 프로그램에 관계하는 업자에게 US\$5000.00 벌금을 물도록 한다.

d. **지구가 국제대회와 관련한 여행업자 추천.** 지구가 국제대회에 관련하여 여행 및/혹은 관광을 주선하기 위한 여행 대리점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 여행업자 추천서를 대회부로 제출해야 한다. 추천을 받은 여행업자가 여행 브로셔 혹은 기타의 유사한 유인물에 국제협회의 상표를 사용하길 희망하는 경우 하기 사항을 법률부로 제출해야 한다:

- (1) “라이온스 지구(단일, 정 및 복합)뿐만 아니라 국제협회는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란 면책사항이 포함된 브로셔 혹은 유사한 유인물 견본 제출.
- (2) US\$25.00 의 협회상표 사용료 지불.

5. **기반조직.** 국제이사회 혹은 동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법률부 부장은 법적 실체가 부록 A 의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건으로 국제협회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사용허가 전에 기반조직은 제안하는 활동이 다음 규정에 따를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a. **준거문서에 대한 조건.** 대상이 되는 기반조직의 정관, 부칙 및/혹은 기타의 준거문서 (이하 “준거문서”라 칭함)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최소한 그 이사회의 과반수가 곧 스탠딩 라이온스클럽의 곧 스탠딩 회원이어야 하며;
  - (2) 관리문서의 개정은 지구대회 혹은 연차 회의에 참석한 기반조직의 일반 구성원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 (3) 기반조직의 구성원은 라이온스클럽 혹은 곧 스탠딩 회원으로 구성되며;
  - (4) 대리 투표를 허용하지 않으며;
  - (5) 기반조직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회비를 부과할 수 없다.
- b. **목적.** 신청하는 기반조직의 목적은 국제협회의 이미지를 고양시켜야 한다. 신청하는 기반조직은 국제협회 혹은 국제재단의 활동, 프로그램 혹은 현존하는 활동에 관여하지 아니 한다.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기타의 요소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 c. **스폰서 하는 라이온.** 신청하는 기반조직은 스폰서 명단 및 사업을 스폰서 하는 라이온들이 승인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d. **취소 가능한 사용권.** 본 항의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반조직에 대해 국제협회의 상표사용에 관한 취소 가능한 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기반조직이 본 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에 한한다. 기반조직은 매년 스폰서 명단과 함께 기반조직의 현 준거문서를 법률부로 제출해야 한다. 기반조직의 준거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권을 취소한다.
- e. **국제협회의 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기반조직은 그의 명칭 및 각종 문서, 선전자료 및 활동을 포함하여 기반조직의 업무상 라이온스 명칭과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국제협회의 상표사용은 국제이사회가 이따금 채택하는 이사회의 방침에 준해야 한다. 국제협회의 상표는 클럽용품부나 공식 판매 면허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품목에 사용하지 아니 한다.
6. **공식 판매면허업자.** 클럽용품부는 라이온스회원, 클럽 및 지구에 국제협회의 상표가 표시된 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제조업자나 기타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판매계약 기간은 클럽용품부가 결정할 것이며 면허비 및/혹은 모든 판매품목에 대한 로열티도 포함시킨다.
7. **대회 교환 핀.** 국제협회의 상표는 국제이사회가 채택한 이사회방침에 준하여 교환 핀에 사용할 수 있다.
8. **대회 호스트위원회.** 국제대회 호스트위원회가 국제대회 개최 전과 기간 중의 용품의 판매를 포함하여 국제대회의 선전자료에 국제협회의 상표를 사용하는 허가하며 해당 호스트위원회 대회부와 법률부의 승인을 받아 양방이 정하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상표에 관한 방침의 이행.** 국제협회의 상표 소유자로서 본 협회의 상표의 침해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법적피해를 사전에 경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 a.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혹은 지구의 불법사용.** 국제협회가 라이온스 회원, 클럽 혹은 지구에 국제협회의 상표가 표시된 품목을 불법사용, 판매, 구입, 제조 및 /혹은 배포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입수할 경우 당사자 혹은 조직에 대하여 상표의 불법사용을 즉각 중지하도록 통고할 것이며 본 방침에 따라 국제협회가 수령하는 로열티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국제이사회 혹은 법률부가 결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 b. **라이온스 회원, 지구 및 /혹은 지구의 지속적인 위반.** 라이온스 회원, 클럽 혹은 지구가 정식 통지를 받은 후에도 국제협회의 상표방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충분한 근거가 협회로 접수될 경우 국제협회가 아래의 어느 한 가지 혹은 모든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 (1) 국제이사회는 위반 하는 회원을 제명하도록 라이온스클럽에 지시할 수 있다. 만약에 클럽이 국제이사회의 지시에 불복할 경우 국제이사회가 클럽을 스탠더스 쿼에 처하거나 차타를 취소 시킬 수 있다.
  - (2) 국제이사회가 필요한 경우 기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3) 국제협회의 상표보호를 위해 법적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